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573 발의연월일: 2021. 1. 22.

발 의 자:김성주·송옥주·남인순

강선우 · 허종식 · 김회재

고영인 · 최종윤 · 송영길

정필모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중증질환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려는 제도로,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외에의료비 영수증, 진료내역 등 다양한 증빙서류가 필요함.

취약계층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, 제도를 알더라도 신청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건강보험 공단에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.

이에 해당 의료비가 발생한 의료기관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신청서 작성, 구비서류 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지정된 의료기관이 신청

서 및 구비서류 작성, 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10 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법인·단체·시설·기관 등은 지원대상 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지급신청 등) ① ~ ③ (생	제10조(지급신청 등) ① ~ ③ (현
략)	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법
	인・단체・시설・기관 등은 지
	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
	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
	청을 지원할 수 있다.